종 합 현 황

2022. 4. 30.

서울시설공단 | 추모시설운영처

목 차

Ⅰ. 사업개요

1. 연 혁 ····· 1

2. 대행협약 근거·관련법령 ····· 2

3. 부서미션 및 주요사업현황 ····· 3

Ⅱ. 일반현황

1. 조 직 ····· 4

2. 인 원 ····· 5

3. 예산 및 사업수지 ····· 5

Ⅲ. 주요(시설) 및 운영·관리현황

1. 화장시설 운영 현황 ····· 6

2. 시립묘지 운영 현황 ····· 9

3. 시립 봉안시설 운영 현황 ····· 9

4. 시립 자연장지 운영 현황 ····· 9

5. 장사시설 사용자격 및 사용료 등 ····· 10

6. 부대시설 임대현황 ····· 11

7. 설비·시설물 현황 ····· 11

8. 기타현황 ····· 15

추모시설운영처

Ⅰ 사업개요

□ 연혁

○ 화장시설(2개소)

- 1930.03 : 서울시립승화원 설립(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 1970.09 : 현 위치로 이전(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 1986.12 : 신축승화원 준공(현대식 화장로 15기)
- 1987.01 : 위·수탁계약 체결(서울시↔서울시설공단)
- 1992.12 : 화장로 1기 증설(총 16기)
- 2000.03 : 화장시간 예약제 시행
- 2000.12 : 화장로 7기 증설(총 23기), 기사대기실, 화장실 등 신축
- 2006.09 : 구형 화장로 16기 교체
- 2007.12 : 화장로 전동대차 설치
- 2010.06 : 화장로 백연방지설비 설치
- 2011.08 : 승화원 리모델링(개별유족대기실 신설, 노후설비교체 등)
- 2012.01 : 서울추모공원 개원(화장로 11기)
- 2013.12 : 추모시설운영처로 통합(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

○ 시립묘지(4개소)

- 1933.05 : 망우리묘지 개설 (′73.3월 만장)
- 1963.11 : 용미리1묘지, 벽제리 묘지 개설 (′91.5월 만장)
- 1968.05 : 내곡리묘지 개설 (′82.12월 만장)
- 1973.05 : 용미리2묘지 개설 (′93.12월 만장)
- 1998.08 : 매장 중단 (시립묘지 수해 이후)
- 2022.01 : 망우리묘지 관리권 이관(중랑구청)

○ 봉안당(5개소)

- 1995.09 : 승화원 봉안당 (′97.4.16 만장)
- 1998.12 : 용미리1묘지 분묘형 추모의 집 (′99.6.27 만장)

- 1999.06 : 용미리1묘지 벽식 추모의 집 (′00.1.6 만장)
- 2000.04 : 용미리2묘지 건물식 추모의 집 (′01.12.14 만장)
- 2002.12 : 용미리1묘지 왕릉·벽식 추모의 집 (′06.9.19 만장)
- 2003.05 : 일반인 봉안 중단 (관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허용)
- 2022.04 : 봉안당 만장으로 신규 안치 중단(부부 합장 안치만 허용)

○ **산골공원(3개소)**

- 1993.03 : 용미리 공원묘지 유택동산 조성(198㎡)
- 1998.05 : 승화원 유택동산 조성(496㎡)
- 2003.06 : 용미리 추모의 숲 조성(11,733㎡)
- 2012.11 : 추모공원 유택동산 조성
- 2014.12 : 용미리 추모의 숲 내 어린이 추모동산 나비정원 조성(650㎡)
- 2021.10 : 승화원 제2유택동산 조성(28㎡)

○ **자연장지 조성현황**

- 2007.05 : 용미리1묘지 자연장지 조성
- 2008.11 : 잔디장 운영 (4,500㎡, 1,600위)
- 2011.04 : 수목장 1~3구역 운영 (3,200㎡, 1,100위)
- 2012.11 : 자연장 추가조성(잔디장 597위, 수목장 4~5구역 조성(2,490㎡, 1,782위))
- 2013.04 : 수목장 6구역 조성 (4,000㎡, 400위)
- 2014.10 : 수목장 7-1구역 조성 (수목형 7,261㎡, 2,262위)
- 2015.06 : 수목장 7-2구역 조성 (수목형 12,869㎡, 6,473위)
- 2016.08 : 다목적 자연장 조성(8,500㎡)
- 2017.09 : 소규모 자연장 조성 (67㎡, 1,147위)
- 2018.11 : 자연숲을 활용한 자연장지 조성(1차)(1,076㎡,6,200위)
- 2020.06 : 자연숲을 활용한 자연장지 조성(2차)(11,350㎡,15,000위)

□ 대행협약 근거 · 관련법령

○ **대행협약 체결 현황(서울시-공단)**

연번	市 대행사업	위탁자	최초위탁	계약일	現 계약유효기간
1	시립장사시설관리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87.1.1~	′21.12.24	~ ′26.12.31
2	서울추모공원관리		′12.1.1~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9조

☐ 부서 미션·비전

미 션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장사시설
비 전	시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장사시설

☐ 2022년 주요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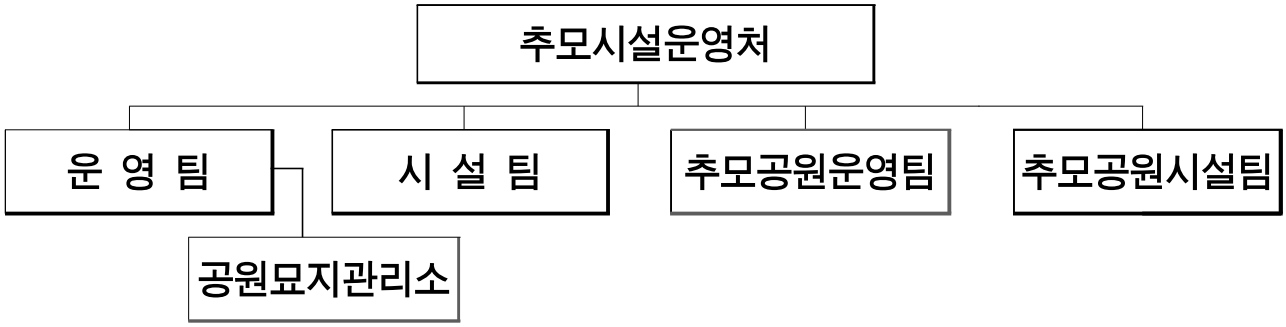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	주 요 내 용	추진팀
고지방법 개선을 통한 관리비 및 체납업무 효율성 제고	50	승화원 관리비의 고지방법을 수기 종이고지서에서 모바일 및 우편고지 자동화로 개선함으로써 체납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운영팀
비대면 및 대면회의를 위한 쾌적한 회의 공간 조성	10	화상회의 및 대면회의를 위한 다목적 회의실을 조성하여 직원의 업무 참여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운영팀
소통을 통한 내·외부 청렴도 향상방안	-	계약업체와 내부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렴의지 전파 및 상호 공감대 형성으로 내·외부 청렴도를 개선	운영팀
2022년 시립묘지 개장·화장 비용 지원 사업	200	개장·화장 비용 지원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분묘의 개장·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사문화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함	공원묘지 관리소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증가 대비 추모시설 화장로설비의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성 제고	4,702	화장로 설비의 기능보강 유지보수를 통해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성 향상 및 화장수요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시설팀/ 추모공원 시설팀
시립묘지 내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석축계단) 설치	246	시민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시립묘지 내 석축 및 급경사 계단 구간에 난간을 설치하여 이용 시민의 잠재적 안전사고에 대비	시설팀
마음 위로 프로젝트 '온기우편함 도입'	9	글쓰기 심리치료 온기우편함 도입으로 따뜻한 위로의 기회 제공 및 시민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	추모공원 운영팀
추모시설 간 장례 서비스 형평성 제고	-	동종시설(승화원, 추모공원) 간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균일하면서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실무자간 소통의 장 마련	추모공원 운영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단식 통로 보강	37	추모공원 내 수직 사다리를 통로형 계단으로 개선·정비하여 작업자 및 직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추모공원 시설팀
추모공원 편의시설(앉음벽) 재정비	40	추모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의 재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 편의 제고	추모공원 시설팀

II 일반현황

1 조 직

☐ 조직도 : 1처 4팀 1관리소



☐ 주요업무

구 분		분 야	업무내용
시립 승화원	운영팀	기획·예산 및 홍보, 수입금, 승화원운영·관리 등	기획·예산, 대내외평가, 서무·복무, 행사(견학프로그램 등)운영, 화장시설운영(접수·봉송·화장작업), 위탁시설관리, 승화원 내 질서유지, 승화원 장사시설 관련 시세외 수입금 관리 등
	공원묘지 관리소	운영·관리 등	공원묘지내 추모시설·봉안시설·자연장관리, 묘지내 매장·개장 등에 관한 사항, 민원접수 처리 및 미납관리비 수납 등
	시설팀	조경, 전기, 토목, 기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자연장지 조성 등	조경·건축·토목시설물, 수목·녹지대 유지관리, 기계 및 화장로 설비 관련 업무, 전기·통신·소방·설비 관리 종합자연장지 조성사업 업무,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관련 업무 토목 및 조경관련 시설물 관리 및 행정업무 등
추모 공원	추모공원 운영팀	기획·예산 및 홍보, 수입금, 승화원운영·관리 등	기획·예산, 대내외평가, 서무·복무, 행사(견학프로그램 등)운영, 화장시설운영(접수·봉송·화장작업), 위탁시설관리, 추모공원 내 질서유지, 추모공원 장사시설 관련 시세외 수입금 관리 등
	추모공원 시설팀	조경, 전기, 토목, 기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조경·건축·토목시설물, 수목·녹지대 유지관리, 기계 및 화장로 설비 관련 업무, 전기·통신·소방·설비 관리 등 등

2 인 원

☐ 일반직 인원현황 : 196명(정원 189명)

구 분	계	사무	소계	시설			설비				조경	조무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조경	실무행정	환경미화	조리	주차관리	시설정비	주차
계	196	100	96	3	2	2	18	21	2	2	5	6	23	4	2	2	4
승화원	123	67	56	2	1	1	12	11	1	1	4	3	15	2	–	1	2
추모공원	73	33	40	1	1	1	6	10	1	1	1	3	8	2	2	1	2

※ 휴직, 교육, 공로연수 포함 / 촉탁계약직 13명, 기간제 26명 별도

3 예산 및 사업수지

☐ 수입실적 및 사업수지 총괄표('22. 4. 30.)

○ 과목별 내역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市세입(A) (예산목표)	수입실적 (B)	지출(수익적) (C)	수지율 (B/C)	달성률 (B/A)
계	12,786	4,287	10,332	41.5%	33.5%
화장료수입	8,676	2,929	10,332	41.5%	33.8%
봉안사용료	270	113			41.8%
정기관리비	1,514	458			30.2%
체납관리비	610	174			28.5%
자연장수입	848	263			31.1%
기타수입	449	233			51.8%
임대료 등	419	117			28.0%

※ 수익적 지출 : 인건비 + 경비 + 예비비(자본적지출 제외)

☐ 집행 현황 (지출)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21 예산 (A)	2022 예산 (B)	증감 (B-A)	당월누계 (C)	집행률 (C/B)
계	42,106	34,147	△7,959	15,738	46.1%
인건비	11,407	12,952	1,545	3,453	26.7%
경비	14,825	13,922	△903	6,879	49.4%
예비비	–	–	–	–	–
자본적지출	13,980	5,331	△8,649	4,807	90.2%
간접관리비	1,894	1,942	48	599	30.8%

Ⅲ 주요시설 운영·관리 현황

1 화장시설 운영 현황

☐ 화장장(2개소) :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 승화원

- 부 지 : 30,976㎡
- 건 물 : 4개동(화장장, 봉안당, 관리동, 기사대기실), 연면적 8,799㎡
- 화장로 : 23기 ※ 20기 가동(1기 정비, 2기 예비)

○ 추모공원

- 부 지 : 71,281㎡(추모공원, 시민공원, 진입도로)
- 건 물 : 화장장(지하1, 지상2), 연면적 18,262㎡
- 화장로 : 11기 ※ 8기 가동(2기 정비, 1기 예비)

○ 화장시설 운영시간대

승 화 원			추모공원		
1	07:00~09:00	관내	1	06:30~08:10	관내
2	08:00~10:00		2	07:20~09:00	
3	09:00~11:00		3	08:20~10:00	
4	10:00~12:00		4	09:10~10:50	
5	11:00~13:00		5	10:10~11:50	
6	12:00~14:00		6	11:00~12:40	
7	13:00~15:00	관내+관외	7	12:00~13:40	
8	14:00~16:00		8	13:00~14:40	관내+관외
9	15:00~17:00		9	13:50~15:30	
10-1	16:00~16:45	개장+사산	10	14:50~16:30	
10-2	16:45~17:30		11	15:40~17:00	
			12	16:30~17:15	개장+사산

○ **화장실적** (2022.4.30. 기준, 단위 : 구)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
총 계	21,110	55,689	56,915	54,585	54,398
승 화 원	14,372	37,354	37,275	35,922	35,881
추모공원	6,738	18,335	19,640	18,663	18,517

○ **코로나19 사망자 별도화장 결과** (단위 : 구)

구 분	계	2022	2021	2020
총 계	3,086	922	1,907	257
승 화 원	1,923	613	1,158	152
추모공원	1,163	309	749	105

▢ 화장시설 사용 구비서류

구분	사망원인 및 감면구분	구비서류	행정정보열람 동의 시
일반 (기본 제출)	병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고사(외인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감면대상 (해당자)	국가유공자	기본제출서류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기본제출서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의사자	기본제출서류 의사자증명서(의사자 증서 원본)	기본제출서류 의사자증명서(의사자 증서 원본)
감면대상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본제출서류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사망자	기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기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관내(서울,고양,파주)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혹은 장례를 치른 증빙서류(택1)	기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기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관내(서울,고양,파주)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혹은 장례를 치른 증빙서류(택1)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 군인	기본제출서류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확인서	기본제출서류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확인서
봉안합골		혼인관계증명서	
개장유골		분묘의 관할 읍, 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시
- 체류기간 내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체류기간 경과 및 미등록외국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 주재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화장동의서 1부(원본,국문공증)

※ 재외국민은 일반 국민과 동일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사망자의 해당 증명원 원본 제출

법 률 명	대 상 구 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법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취약계층(무연고사망자, 저소득층) 장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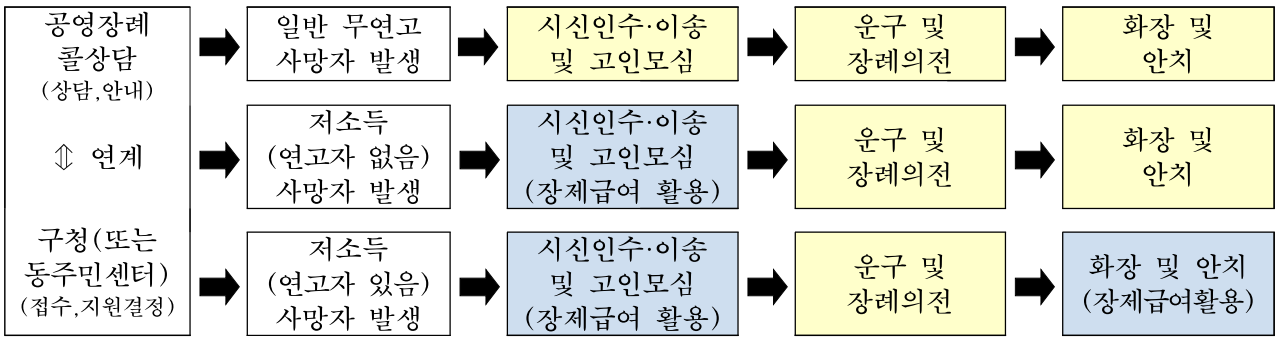
○ **관련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1항

○ **대　　상** : 일반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

- 일반 무연고사망자
  ·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인수를 거부한 경우
- 저소득층
  · 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장제급여 대상이고,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기타 구청장 또는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수행흐름도**

- 일반경쟁입찰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대행업체에서 용역처리



2 시립묘지 운영 현황

○ 사용현황 (2022.4.30. 현재, 단위 : 기)

구 분		계	용미1	용미2	벽제리	내곡리
총면적(천㎡)		5,388	2,836	1,071	1,375	106
사용 분묘 (기)	소 계	46,818	30,859	6,944	8,114	901
	비조성(69%)	32,469	23,454	-	8,114	901
	조 성(31%)	14,349	7,405	6,944	-	-

3 시립 봉안시설 운영 현황

○ 사용현황 (2022.4.30. 현재, 단위 : 기)

구 분	연면적(㎡)	안치능력	안치현황	안치율	잔여기수	보수	비 고
계	8,517	89,335	88,641	99.2%	127	567	-
승화원 추모의 집	985	13,434	13,356	99.4%	2	76	97.04.16
용미리분묘형 추모의 집(1묘지)	456	7,650	7,630	99.7%	7	13	99.06.27
용미리 벽식 추모의 집(1묘지)	2,644	5,348	5,329	99.6%	14	5	00.01.06
용미리 건물식 추모의 집(2묘지)	2,958	35,969	35,517	98.7%	54	398	01.12.14
용미리왕릉、벽식 추모의 집(1묘지)	1,474	26,934	26,809	99.5%	50	75	06.09.19

4 시립 자연장지 운영 현황

○ 자연장지 사용현황 (2022.4.30. 현재, 단위 : 기)

구 분	안장 능력	년도별						비 고
		'07~'18	2019	2020	2021	2022	누계	
잔디장	27,987	4,270	1,610	1,778	1,553	613	9,824	능선형 사용가능
수목장	15,379	15,379	0	0	0	0	15,379	'17.2.26(만장)

○ 산골공원 (단위 : 위)

구 분	안장능력	연면적(㎡)	2022년	누계	비 고
용미1묘지 추모의숲	무제한	11,733	10위(일평균 0.08위)	13,471위	'03.05.01 개시
승화원 유택동산		524	1,418위(일평균 11.82위)	111,776위	'98.01.01 개시
추모공원 유택동산		103	379위(일평균 3.16위)	16,155위	'12.01.16 개시
나비정원		650	88위(일평균 0.73위)	1,640위	'14.11.27 개시

5 장사시설 사용자격 및 사용료 등

▢ 장사시설 사용자격

○ 화장시설 : 전 국민 누구나 사용가능

○ 봉안시설 : 서울/고양/파주시민 중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산골시설 : 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유회, 서울/고양/파주시민 중 타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회로써 산골희망자

○ 자연장지 : 서울/고양/파주에 주소를 둔 주민

▢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19.5.16~)

구 분		내 용	사 용 요 금	
			서울특별시민	다른지역주민
묘 지	사용료	◦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85,000 92,500	370,000 185,000
		◦ 비조성분묘(1제곱미터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28,320 14,160	56,640 28,320
	관리비 (매5년마다)	◦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27,500	27,500
화장시설	사용료	◦ 일반시민(1구당) - 대 인(만 13세 이상) - 소 인(만 12세 이하) - 사 산 아 - 개장유골	120,000 100,000 50,000 60,000	1,000,000 400,000 200,000 400,000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무료	무료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50,000	50,00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무료	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무료
		◦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사망자 〈신설〉	-	400,000
		◦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신설〉	120,000	500,000
봉안당	사용료	◦ 일반시민(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이용불가 100,000	이용불가 300,000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00,000 50,000	이용불가 15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00,000 50,000	이용불가 120,000
	관리비 (매5년마다)	◦ 일반 시민(1위당)	100,000	180,000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1위당)	50,000	9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1위당)	25,000	45,000
자연장지	사용료 (40년)	◦ 일반시민(1위당)	500,000	이용불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1위당)	25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1위당)	250,000	

※ 비고(1) : 위 표의 서울특별시민에는 시립화장시설, 시립봉안시설, 시립자연장지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포함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위 장사시설이 설치된 관할 행정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를 말한다

※ 비고(2) :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는 자녀중 1인이 서울특별시민(고양,파주 포함)이고 서울특별시 (고양,파주 포함)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경우를 말한다. 〈신설〉

6 부대시설 임대현황

☐ 승화원내 부대수익시설 지역주민 위탁 운영

○ 부대시설 : 식당·매점·카페 각 1개소, 음료자판기 14대

○ 계약업체 : 지역주민법인체 … (주)높빛

○ 계약기간 : '18.11.1 ~ '21.10.31(3년)

○ 계약금액 : 연간 252,7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익지원금 연 7억

※ 2차년도 수익지원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2020.11.30. 자)

☐ 추모공원 내 부대수익시설 지역주민 위탁 운영

○ 부대시설 : 일반음식점(식당), 휴게음식점(카페, 편의점), 자판기(4대)

○ 계약업체 : 주민운영법인 … 주식회사 새원

○ 계약기간 : '22.1.16 ~ '27.1.15.(5년) *최초 3년 계약 후 2년 연장

○ 계약금액 : 연간 18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7 설비·시설물 현황

☐ 화장로설비 현황

○ 시립승화원 : 23기

구 분	수 량	주요설비 현황
화 장 로	23	· 화장로(주·재연소로), 로내대차, 단열문
연소설비	23	· 주·재연소버너
배출가스처리설비	23	· 가스냉각기, 여과집진설비, 다이옥신촉매장치, 백연방지설비 등
자동운반설비	4	· 전동대차설비
중앙통제설비	1	· 중앙감시반(모니터, PC 등), 현장제어반 등

○ 추모공원 : 11기

구 분	수 량	주요설비 현황
화 장 로	11	· 화장로(주·재연소로), 로내대차, 단열문
연소설비	11	· 주·재연소버너
배출가스처리설비	11	· 가스냉각기, 여과집진설비, 저온촉매장치 등
운송설비	1식	· AGV 설비(5), 전동대차(6), 수골용 컨베이어 시스템(2)
중앙통제설비	1식	· 중앙감시반(모니터, PC 등), 동력반, 제어반 등
기타설비	1식	· 분골기(2)

▢ 기계설비 현황

○ 시립승화원

구 분	주 요 설 비 현 황
냉난방 설비	· 흡수식 냉온수기 : 150RT×2대 / · 냉각탑 : 250RT×2대
	· 시스템 에어컨 (유족대기실용) : 실내기 33대, 실외기 4대
공조 설비	· 공기조화기 : 3대(냉방용량271,200㎉/h, 난방용량277,400㎉/h)

○ 추모공원

구 분	주 요 설 비 현 황
냉난방 설비	· 지열설비 : 3대 (냉방 40.3USRT, 난방 44.0USRT) · 냉난방기(EHP) : 실내기(43대), 실외기(21대)
공조 설비	· 공기조화기 : 3대 · 히트펌프공조기 : 유족식당 냉난방 · 환기 및 악취방지설비
송/배풍기	· 화장로전실, 분골실,및 주방 급배기휀 : 4대 · 기타 기계실/주차장배기 외

▢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법정점검)

구 분	점검주기	대상시설	점검 근거	비 고
전기설비 정기점검	3년 1회	승화원, 추모공원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13조	한국전기 안전공사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1년 1회	승화원, 건물식, 추모공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4조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소방서 및 전문점검업체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1년 1회			
가스정기검사	1년 1회	승화원, 추모공원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한국가스 안전공사
3종 시설물 정기점검	반기 1회	승화원 (화장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시행령제8조	자체점검
시설물 정기점검	반기 1회	추모공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지침	자체점검
승강기	1년 1회	승화원, 건물식, 추모공원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청소	연 1회	승화원(사무동), 용미리묘지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분뇨수집 운반업자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승화원, 묘지, 추모공원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제1항	대행업체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반기 1회 (단, HCl 월 2회)	승화원, 추모공원, 화장로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52조	환경측정 대행업체
수질오염물질 자가 측정	연 1회	용미리2묘지, 추모공원, 화장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환경측정 대행업체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설치 후 3년 1회 이후 매 4년 1회	도시가스 정압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대행업체

□ 환경관리 현황

○ 승화원 : 화장로 배출가스 및 묘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 측정항목 및 결과(2022. 4월 기준 측정 결과)

구 분	대 기(화장로 배출구)				
측정 항목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먼 지
배출허용기준	200ppm 이하	50ppm 이하	75ppm 이하	10ppm 이하	30mg/Sm3 이하
법정 주기 (허가사항)	반기 1회 (분기1회)	반기 1회 (분기1회)	반기 1회 (분기1회)	월 2회 (월 2회)	반기 1회 (분기1회)
측정 결과 (평 균 값)	17.6	0.1	24.1	2.19	6.5

※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은 분기측정으로 2022년 4월 기준 측정 결과 값임

*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8)

* 승화원 최초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분기1회 측정 조건으로 허가됨(고양시 환경보호과-2012.01.13.)

- 측정항목 및 결과(2021 기준 측정결과)

구 분	수 질(묘지 오수 방류수)				
측정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 질소	총 인	총대장균군수
방류수 기준 (일 처리용량 50㎥ 이상)	10mg/L 이하	10mg/L 이하	20mg/L 이하	2mg/L 이하	3,000개/mL 이하
측정 결과	1.0	0.4	18.008	1.808	0(불검출)

*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3)

○ 추모공원 : 화장로 배출가스

- 측정항목 및 결과(2022. 4월 기준)

구 분	대기(화장로 배출구)				
측정 항목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먼 지
배출허용기준	80ppm 이하	20ppm 이하	60ppm 이하	10ppm 이하	15mg/Sm3 이하
법정 주기	반기 1회	반기 1회	반기 1회	월 2회	반기 1회
측정 결과 (최고 / 최저)	불검출	14.4	46.0	1.45	6.5

*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추모공원은 2012년 1월 개원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

* 측정 시 관 속에 포함된 부장품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농도가 상승할 수 있음